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확보에 관한 小考
 -지급여력제도를 중심으로-

조 기 인* · 이 수 호**

A Study on the Solvency Margin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of Korea

Ki-Inne Cho · Soo-Ho Lee

< 목 차 >

1. 연구의 목적	(2) RBC 비율
2.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규제	다. EU의 지급여력제도
가. 규제의 필요성	(1) 개요
나. 규제 방법	(2) 지급여력기준
(1) 시장참여에 대한 규제	라.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2) 경영상의 규제	(1) 개요
(가) 자산운용규제	(2) 지급여력비율
(나) 요율규제	4.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
(다) 책임준비금	가.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제
(3) 파산대비규제	도의 변화
3. 지급여력제도	나. 지급여력제도의 내용
가. 지급능력과 지급여력	다. 회사별 지급여력 현황
나. 미국의 RBC 제도	5. 결 론
(1) 개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olvency margin and its application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RBC(Risk-Based Capital). The regulation of financial status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of Korea comprises management evaluation and

* 한국해양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solvency margin.

The solvency margin regulation of Korea is established based on the European Model. It requires a company should retain the net asset exceeding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 which is calculated that the sum of premium and solvency margin is under the sum insured and operation expenses.

The European Model has pros and cons. The simplicity of its calculation makes it preferable rather than RBC but it only reflects management risks of an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RBC classifies exposed risks into management risks, investment risks, interest risks and so on. After thorough quantification of each risk RBC guides net asset the company should preserve.

It is pre-requisite to regulat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on the basis of RBC in terms of financial status rather than current European Model as the globalisation holds us in better financial fitness.



1. 연구의 목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실질적 감독주의 하에서 경영전반에 걸쳐 엄격한 사전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경제 및 문화등 각 부문에 있어 개방화, 자유화가 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한 가운데 1997년 초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및 WTO등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ENT(Economic Need Test) 제도의 폐지 및 재보험자유화 등 시장 개방,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의 자유화, 영업활동규제 및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7년 말의 단기외환부족사태로 인하여 초래된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금융산업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자유화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자유화 즉 규제 완화는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효용의 최대화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험료의 과도한 인하경쟁과 위험자산에의 투자 확대 등을 초래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감독당국의 감독방향 역시 사전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반면 경영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은 재무건전성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지급능력을 확보토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무건전성(**Financial Health**) 규제 중 큰 중심의 축은 **CAMEL** 제도¹⁾를 원용한 경영실태 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하여는 IMF등에서 국제적 적합성을 갖춘 강력한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방식을 근간으로 한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²⁾

본고는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규제 제도 중 핵심적 제도의 하나인 지급여력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미국의 위험기준자본금(**Risk Based Capital : RBC**)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규제 방식과 관련하여 세계 보험산업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와 EU의 지급여력제도 그리고 미국의 **RBC**방식을 채택한 일본의 **Solvency Margine**제도를 살펴본다. 이어서 EU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의 주요내용 및 보험회사별 현황을 살펴보고 결론으로서 EU 방식 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RBC**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규제

가. 규제의 필요성

보험산업은 은행, 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여타 산업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다. 이와 같이 정부가 보험산업에 깊이 있게 관여하게 되는 이유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외부 불경제성, 보험상품의 원가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적 특성, 보험산업의 정보비대칭성(**asymmetry information**), 공공적인 성격 및 독점적 성격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의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실질 감독주의 방식아래 보험산업에의 진입단계에서부터 보험상품의 가격 규제, 회계감독 및 자산운용규제, 모집활동규제,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규제 등 경영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한 감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대한 이러한 감독정책이 과거에는 보험시장진입규제, 보험상품가격규제, 부당영업행위규제 등과 같은 사전적인 규제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보험시장의 개방 및 자율화 추세에 따라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경영 결과에 책임을 묻는 사후적인 규제에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규제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본질인 보험계약내용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은 리스크의 발생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제도이므로 보험자가 약속된 보

- 1) 1979년 미국연방은행감독기관(OCC, FRB, FDIC)이 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한 통일된 검사 평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Earnings, Liquidity**에 대한 부문별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 2)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 평가는 경영실태평가의 한 항목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실태평가항목중 가장 큰 비중(30%)을 차지하고 있다.

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야기시키게 된다³⁾.

보험회사의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최대의 피해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약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불해 왔던 보험료 외에도 리스크의 발생에 의한 손실 발생을 보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지급불능과 관련된 또 다른 이해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 주주는 납입자본 및 잉여금을 상실하게 되며 도산된 보험회사 이외의 주주들도 직·간접의 손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손실과 함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용을 존립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비용의 발생이다. 이는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이른바 외부효과(externalities)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부실 및 도산은 일반 제조업체와 경우와는 달리 경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예를 들면 한 금융기관의 도산은 다른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악화시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 인출 쇄도 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은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중단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이자율, 물가 및 실업을 상승을 야기함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금융위기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으로부터 보험제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시장의 대·내외적 개방, 금리자유화, 자본시장개방, 은행, 증권등 타 금융권 및 손·생보간의 업무영역 구분 축소등 경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각종 리스크⁴⁾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 불능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지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규제 방법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단계에서부터 보험요율 및 자산운용 등과 같은 경영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건전한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이행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Barrese, J. and J.M. Nelson, 「The Consequences of Insurer Insolvencies」 Paper presented at ARIA meeting, 1991. pp. 4~7.

4) 리스크(risk)는 위험이란 말로 번역되나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측정가능한 불확실성(F. Knight), 어떤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실제하는 불확실성(M.K. Green), 기대되는 결과로부터 이탈될 가능성(Emmett. J. Vaughan)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리스크와 위험의 의미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키피(Harold D. Skipper)는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중 신규사업허가조건, 보험요율규제, 재무규제, 판매조직에 대한 규제, 지급능력에 관한 규제, 감독당국에 의한 법정관리등 특별관리 및 보험보증기금제도등이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규제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광의의 분류방식)⁵⁾.

클라인(Robert W. Klein)과 바트(Michael M. Barth)는 지급능력 규제제도를 소극적 수단과 적극적 수단으로 나누고 있다. 소극적 수단이라 함은 감독 당국이 단순히 재무상태가 위험하거나 과도하게 리스크를 취하는 회사는 물론 결과적으로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회사를 단순히 발견해 내는데 사용되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즉 재무상태보고서, 정기검사, IRIS(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등과 같은 지급능력분석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높은 리스크를 취하는 보험회사의 경영 행위를 발견해 내는 데만 사용하고 리스크를 제한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수단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기 및 특별검사, 경영실태평가, 조기경보제도⁶⁾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적극적인 수단들은 높은 리스크를 취하는 경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최저자본금제도,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 자산운용규제, 최저책임준비금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저자본금으로 300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적립과 관련한 규제, 자산운용규제등을 실시하고 있고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일 경우 단계적으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극적 수단들은 리스크가 높은 행위를 하는 회사를 발견해내는 반면 시장의 왜곡(dislocations)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적극적 수단들은 리스크가 높은 행위를 실제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회사 및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쟁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수단을 선택할 경우에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⁷⁾

(1) 시장참여에 대한 규제

보험회사의 시장 참여에 대한 규제는 보험회사 설립조건, 허용회사 형태, 주주자격제한, 보험사업자의 타사업 겸영 금지, 손·생보 겸영 금지 등의 방법이 있다. 시장참여의 규제는 재무상태가 불량하거나 보험사업 경험이 없는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가입자가 건전하지 못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구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5) Harold D. Skipper, "Insurer Solvenc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olicy Issues in Insurance, Paris : OECD, 1993. pp 112~132

6) 조기경보제도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조기에 발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독기관은 조기경보제도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부실징후를 감지하여 주의 요하는 회사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엄격하고 밀착된 감독을 함으로써 실제 파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IRIS,FAST(Financial Analysis and Surveillance Tracking)가 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동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1999년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제도를 폐지하였다.

7) Robert W. Klein and Michael M. Barth, "Solvency Monitor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13(3), 1995. p.261

8) Harold D. Skipper. loc cit, p.112

시장참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은 보험회사의 설립기준으로 특정보험시장의 진입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설립허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최저 허용 수준, 보험사업자의 조건등이며 이중 자본금에 대한 요건은 최저자본금(minimum capital)제도이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보험사의 설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최저 납입자본금이 손해보험사업의 경우 300억원으로서 보험사업의 신규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외에 영업종목별로 구분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종목에 대해 일괄허가를 함에 따라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자본금 수준이 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보험종목별로 최저자본금을 정하고 있으며 여러 종목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저자본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위험과 무관하고, 너무 낮은 자본금에 도산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적시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브라운(Mark J. Browne)과 호이트(Robert E. Hoyt)는 1970년에서 1990년까지의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자료를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저자본금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늘어났으며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지급불능회사가 늘어났다고 주장하였다.⁹⁾

이와 같이 미국 보험산업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재무안전성 유지를 위한 전통적인 고정최저자본금 제도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급능력 규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서 등장한 것이 RBC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경영상의 규제

(가) 자산운용규제

보험사의 자산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 투자의 안정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위험이 높은 특정형태의 자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투자 대상 또는 투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자산 운용에 대한 많은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자산운용부문은 보험회사의 채무건전성을 심각하게 좌우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 보험회사의 파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볼 때 파산의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자산운용의 실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비교적 규제를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이러한 경

9) Mark J. Browne and Robert E. Hoyt, "Economic and Market Predictors of Insolvencies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2(2), 1995. p.314

10) 세계적인 보험회사 평가회사인 미국의 A.M.Best사가 미국 보험시장에서 과거 22년간(1969년-1990년) 지급불능된 손해보험회사 총 372개사의 지급 불능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 적절한 가격책정 및 준비금 적립 부적절 86개사(28%), 회사 규모의 급격한 확대 64개사(21%), 자산운용 실패 30개사(10%)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은 1990년에 발생한 Executive Life사를 포함한 몇몇 회사가 정크본드의 투자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서 보험자산 운용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조하여 그 이용 방법과 이용비용의 대강을 정하고 있고 보험감독규정에서 다시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투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한도등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등 보험자산의 운용 방법을 엄격하게 감독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투자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회사의 수익력 약화로 인해 계약자의 손실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감독당국에서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대출제한업종을 축소하고 해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폭을 확대하여 오고 있는 추세이다.

(나) 요율규제

보험 요율은 보험상품의 가격으로서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능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율규제는 요율수준을 과도하지 않고 불충분하지 않으며 불공정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시장 점유율의 확대 또는 유동성의 일시 확보등 여러 이유에 따라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이하로 보험료를 인하하여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데 이는 보험사의 지급불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자산이 적절히 투자되고 보수적으로 평가되며 경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장기간동안 수입되는 보험료가 향후의 보험금 및 사업비 지출에 충분치 못한다면 지급불능이 발생할 수 있다. 불충분한 요율 설정에 의한 지급불능사례가 많았던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요율 설정의 적정성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오랫동안 고정요율제도를 채택하여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요율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는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특성을 감안 할 수 없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보험소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당국에서는 1994. 4월부터 보험종목별로 단계적인 범위요율제를 도입하였으며 1996. 4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자유요율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고 2000.1월부터는 전 종목에 있어서 순보험 요율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요율자유화는 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리스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보험회사의 도산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다) 책임 준비금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된다. 준비금 설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래의 보험금과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 자산과 계약상의 부채

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지급 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등의 적립 방식은 종목별로 다르며 장기 저축성보험료적립금은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구성항목은 일반적으로 보험수리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비하여 지급준비금은 손해사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향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따르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가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된다.

지급준비금의 적정한 적립은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지급준비금이 과소 적립될 경우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주주배당등 사외유출분의 증가로 지급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 파산대비 규제

실제로 보험회사의 파산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보증기금(Guaranty Fund)으로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게 된다.

보험보증기금은 지급불능이 발생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회사의 보험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형태로 대개 개인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일정한도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보험보증기금은 보험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 도산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고 있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미경과보험료등의 지급채무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보험회사의 도산 확률과 보험금등의 평균지급액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보증기금의 크기와 지급여력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론적으로 볼 때 지급여력이 충분히 크다면 보험보증기금제도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보증기금의 재원을 각출하는 방법은 두가지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회사의 도산이 있기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각출하거나¹¹⁾ 또는 미국과 같이 보험회사 정리 후에 보험보증기금 규정에 따라 보전해 준 금액을 회사별 보험료 비례로 분담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보험료 비례 분담금 결정방식은 결국 파산된 부실한 회사를 위해 건전한 회사의 가입자가 보전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펠트하우스(Feldhaus)와 바트(Barth)는 보험회사별로 리스크 요소를 고려하여 보증기금의 각출금제도가 지속된다면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리스크를 취하는 보험회사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보조하는

11) 우리나라는 원수보험료(생명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의 0.1%를 각출하나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장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0.15%를 각출한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3. 지급여력제도

가. 지급능력과 지급여력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특정 시점에서 보험금 등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약정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재무적 건전성(Financial Health or Financial Strength)을 나타낸다¹³⁾.

지급능력이 있다는 말은 지급능력평가시점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운영에서 지게 되는 각종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험감독상 지급능력이 있다는 말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부채액보다 최소한 정부에서 정한 최소 지급여력(solvency margine)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P+I=X+C+D+\Delta U$$

P : 보험료 수입, I : 투자수입

X : 보험금 지급액, C : 사업비, D : 배당금, ΔU : 지급여력의 변동액

위 등식은 어느 기간동안에 보험료와 투자 수입이 보험금, 사업비, 배당금보다 많으면 지급여력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여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시점에서의 지급여력 U는 자산-부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지급여력 U가 보험감독당국에서 정한 최소지급여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ly insolvent) 이라고 하며 이는 법적 지급불능(legally insolvent)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 즉 부채 변제를 위하여 책임준비금등을 적립하게 되는데 지급여력은 이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지급능력 즉 채무이행에 필요한 자산이외에 자본금 또는 잉여금등의 형태로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유보 자산¹⁴⁾으로서 예기치 못한 미래의 상황에 대한 보험회사의 충격흡수장치(bumpper)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보험회사는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책임 준비금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되며 통상의 리스크를 초과한 이상 리스크는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이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12) William R. Feldhaus and Michael M. Barth, "Risk-Based Pricing Factors for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Guaranty Funds," CPCU Journal, vol 45(4), 1992.

13) J. David Cummins, Richard A. Derrig, 「Classical Insurance Solvency Theory」, Kluwer Acade Publishers. 1988, p.1.

14) 미국에서는 이것을 보험계약자잉여금(Policyholder's Surplus)이라고 하며 유럽에서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급여력제도는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지는 확률을 낮게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향후 기간의 보험사업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여 보험사의 부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 미국의 위험기준자본금(Risk Based Capital : RBC)제도

(1) 개요

동 제도는 보험회사가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영업규모 및 리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의 증가에 맞게 보험계약자잉여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 하에 보험회사에 대한 최저자본 및 잉여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보험회사는 실제 보유한 위험에 상응하는 최소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행정 개입을 통하여 규제 받게 된다. 따라서 동제도는 보험회사가 취하는 리스크의 정도가 주요한 고려 요소로서 최저 자본 요구액을 결정하는 탄력적인 수단¹⁵⁾의 하나이다.

어떻게 적정한 리스크기준 자본금을 도출하느냐 하는 것이 동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리스크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계수를,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계수를 적용한 후 리스크요소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공분산조정을 거쳐 리스크 기준자본금을 산출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실제 자본금의 적정성은 공식에 의해 결정된 리스크 기준 자본금과 비교하여 결정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 여력은 총조정자본금(TAC : Total Adjusted Capital)¹⁶⁾으로 측정되며 이 자본금과 위험기준 자본금과의 비율이 바로 RBC 비율이다.

(2) RBC 비율

RBC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험을 기준하여 산출한 자본금(리스크액)을 분모로 하고 총조정자본금(지급여력)을 분자로 하여 산출된 값이다. RBC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표 1>과 같이 구분되는 리스크 값을 구해야만 하는데 각 리스크값 $Rx(t)$ 는 아래의 수식에 따라 결정된다.

$$Rx(t) = \sum Fxi(t) \times Bxi(t)$$

$Fxi(t)$: t 시점에 있어서 $Rx(t)$ 의 위험구성요소에 대한 RBC factor

$Bxi(t)$: $Fxi(t)$ 의 기준 가격

<표 1>에서 구분한 위험별로 $Rx(t)$ 값이 구하여지면 아래와 같이 총조정자본금 (TAC)과 리스크액 (RBC(t))을 구하여 RBC비율을 산출한 후 이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소정의 행정개입을 행하게 되는데 RBC 비율 산출방식과 단계별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 NAIC, 1996 NAIC Property and Casualty Risk Based Capital Report including Overview and Instructions for Companies, NAIC, December 1996 p.1

16)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서 부채의 경제적 가치를 차감한 개념으로 순자산 또는 보험계약자 잉여금과 유사한 개념임

<표 1> 미국 RBC 제도의 리스크구분

구 분	내 용
$R_0(t)$: 부의자산리스크	자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예상치 않은 부채의 발생등과 같이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R_1(t)$: 채권자산리스크	채권가격의 등락이나 단기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
$R_2(t)$: 주식자산리스크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R_3(t)$: 신용리스크	대출금이나 재보험의 회수 불능 위험
$R_4(t)$: 준비금리스크	각종 준비금의 부실 적립에 따른 위험
$R_5(t)$: 보험가격리스크	보험가격의 산출오류 중 발생하는 손실 위험

● RBC 비율 산출방법

$$\text{RBC 비율} = \frac{\text{총조정자본금(지급여력)}}{\text{리스크액}} \times 100\%$$

- 총조정자본금 : 자본금 + 잉여금 + 자산평가준비금 + 임의투자준비금 + 계약자
 배당준비금 × 50% + 손해액 할인 및 손해사정비용준비금

- 리스크액

$$\text{ACL RBC} = \frac{R_0 + \sqrt{(R_1)^2 + (R_2)^2 + (R_3)^2 + (R_4)^2 + (R_5)^2}}{2}$$

*ACL RBC : 공분산후의 RBC (94년 40%, 95년 45%, 96년 50%)

● 조치내용

RBC 제도는 계산절차의 복잡성, RBC factor 결정의 자의성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보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보험계약자 잉여금 기준보다 진일보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RBC 비율에 따른 조치 내용

RBC 비율	조치 단계	내 용
200%미만	자율규제조치단계 (Company Action Level)	포괄적인 재무계획서를 45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제출
150%미만	규제조치단계(Regulatory Action Level)	- 재무계획서 제출 - 자산, 부채 및 경영 검사, 분석 - 시정조치를 명기한 지시명령서 발부
100%미만	위임관리단계(Authorized Control Level)	- 규제단계의 조치 - 보험계약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
70%미만	강제관리단계(Mandatory Control Level)	보험사업자를 감독 당국의 관리하에 존치

자료 : 보험개발원, 「미국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1997

다. EU의 지급 여력제도

(1) 개요

EU의 지급 여력 제도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기본 지침이 손해보험은 1973

년, 생명보험은 1979년 제정되어 줄곧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신용보험은 개정이 있었음) 비록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1997년 여러 국가의 실무그룹이 제출한 보고서에도 커다란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급여력기준액을 크게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클레임 처리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Long-Tail Business의 경우 지급준비금을 기초로 계산된 제 3의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제도는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계액이 보험료와 solvency margine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확률을 구하여 이를 보험료와 보험금 기준으로 변경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방식이다.

즉 과거 손해율이나 합산율이 정규분포 등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일반적으로 0.1%~0.3%)을 정한 다음 파산확률(총손해액과 총사업비의 합이 총보험료와 solvency margine을 초과할 확률)을 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급여력기준(required solvency)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2) 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을 보험료기준(Premium Basis)과 보험금기준(Claim Basis)으로 구분하여 이중 큰 금액 이상의 순자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금 기준은 보험료기준의 보완적인 기능으로 사용되는 데 각 기준별 지급여력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보험료기준 지급여력기준액

—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해약환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

$$(ECU1,000만까지의 보험료 \times 18\%) + (ECU1,000만 초과보험료 \times 16\%) = A$$

$$\text{기준금액} = A \times NC/GC$$

단 GC : 총발생보험금 (Gross claims paid, 즉 재보험금 정산 전

손해액으로서 지급보험금+이월발생손해액-발생손해액 환입)

NC : 순발생보험금 (Net claims paid, 즉 재보험금 정산 후

손해액으로서 GC-재보험회수금)

단 NC/GC의 비율이 50%미만이면 50%를 적용함

● 보험금기준 지급여력기준액

— 최근 3개년도의 총발생보험금(재보험 회수금 공제전)에 대해 다음의 계산을 함.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의 경우는 7년 통계를 사용

$$(ECU 700만까지의 3년 평균 총발생 보험금 \times 26\%) + (ECU700만 초과 3년 평균 총발생보$$

$$\text{협금} \times 23\% = D$$

$$\text{기준금액} = D \times \text{NC/GC}$$

단 NC/GC의 비율이 50%미만이면 50%를 적용함

EU의 지급여력 제도는 위와 같이 계산되는 산식에서 나타나 듯 보험회사의 규모가 증가할 때 (즉 원수보험료나 손해액이 증가하면) 필요한 지급여력의 규모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도록 되어있으며(Sliding Scale), 원수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 비율이 높으면 위험이 감소되므로 필요한 지급여력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며 그리고 지급여력규모를 보험료기준과 보험금 기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손해율이 높은 회사는 동일 규모의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지급여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라. 일본의 Solvency Margine제도

(1) 개요

일본은 미국의 위험기준자본금 제도와 유사한 지급여력제도를 1996년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조기경보조치로서 활용하고 있다.

동제도에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 리스크에 상응하는 리스크계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자본금을 구한 다음 보험회사의 자본금, 잉여금 등으로 계산되는 실제로 보유한 지급여력을 산출하여 이를 위험기준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조기경보제도를 운영한다.

반영하는 리스크는 보험리스크(일반보험 R1, 거대재해리스크 R2), 예정이율리스크 R3, 자산운용 리스크 R4, 경영관리리스크 R5이며 리스크의 내용은 <표 3> 과 같다.

<표 3> 일본지급여력제도의 리스크구분

구 성 내 용		비 고	
보 험 리스크	일반보험리스크(R1)	실제보험사고의 발생율이 통해 예측과 일치하지 않을 리스크	
	거대재해리스크(R2)		
예정이율리스크(R3)		책임준비금 산출시의 기초인 예정이율을 확보할 수 없는 리스크	
자 산 운 용 리스크(R4)	가격변동리스크	보유유가증권, 기타자산	
	재보험 리스크	유가증권리스크	자금거래당사자의 채무불이행리스크
		재보험리스크	재보험 및 재보험회수불능 리스크
	부외거래리스크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관련리스크	
관련회사리스크	관련회사 투자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R5)		업무운영상 통상예측을 초과하여 발생할 리스크(보험,예정, 자산운용리스크합계액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 상태를 고려하여 2% 또는 3% 반영	

(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산출방법

$$\text{지급여력비율} = \text{지급여력총액} / \text{리스크총량}$$

지급여력총액 : 자본합계 + 가격변동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충당금 + 주식미실현이익의 90% + 토지미실현이익의 85% + 해약환급금상당액초과분 + 사원배당준비금 + 세효과상당액 + 상품유가증권매대손충당금 + 공탁금 + 차입자본금, 잉여금의 합계액 - 이연자산

$$\text{리스크총량} = \sqrt{(R1)^2 + [(R3)^2 + (R4)^2] + R5 + R2}$$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위의 공식으로 산출한 위험기준 자본금(리스크총량)과 실제로 보유한 지급여력과 비교하여 평가되며 이 비율이 일정수준을 하회 할 경우 조기경보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조치를 받게 되는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구분 :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200%미만일 경우
⇒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개선계획의 제출요구 및 실행명령
- 제 2구분 :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100%미만일 경우
⇒ 보험금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
- 제 3구분 :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
⇒ 기한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일본의 제도는 미국의 RBC 제도를 모방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저축성보험의 예정이율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진 같은 거대재해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지급 여력제도

가.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최초의 제도는 1986.3월에 도입된 보험계약자잉여금대 보유보험료비율제도로써¹⁷⁾ 연간보험료 총액이 보험계약자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동 제도는 보유보험료는 원수보험료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계약자 잉여금은 경영성과의 결과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크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적절한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외형 성장위주를 지향함으로써 초래되기 쉬운 재무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1987년의 기준비율은 900%로 설정되었으나 그 후 연차적으로 이 비율이

17) 보험계약자잉여금대 보유보험료비율은 1930년대 케니(Kenny)에 의해서 주창되었으며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지급여력과 관련된 자본금과 잉여금의 충실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리스크 등 제반 리스크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급능력 측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어 미국의 경우 1992년부터 조기 경보제도와 함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만 사용되고 있다.

<표4-1> 보유보험료 및 보험계약자잉여금 산정방식

보유보험료	총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해약환급금 환입)-지출보험료(출재보험료+해약환급금) *단 장기저축성보험의 저축보험료는 제외
보험계약자 잉여금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법97조 준비금 차감항목 : 이연자산, 자기주식, 자본잠식(50%이상)회사의 주식지분, 선급비용, 퇴직급여충당금부족액등

<표4-2> 보험계약자 잉여금대 보유보험료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보험계약자잉여금(A)	9,241	9,609	7,956	9,694	12,912	13,970	16,852
보유보험료(B)	32,510	40,135	47,871	61,383	74,891	89,326	79,096
비율(B/A)	351.8	417.7	601.7	633.2	580.02	639.4	469.4

자료 : 보험감독원 내부자료

강화되어 1991년 이후에는 500%로 고정되었으며 그 산정방식 및 연도별 비율은 <표 4-1> 및 <표 4-2>와 같다.

그런데 동제도에는 기준비율을 지키지 못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독정책적으로 담보력 여부를 측정, 보험회사를 지도 감독해 나간다는 의미 외에는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보험시장의 개방화, 자유화에 따라 보험감독당국에서도 보다 구속력 있는 지급능력확보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996. 2월 손해보험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서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유보험료 대 보험계약자잉여금 비율제도는 폐지되었다.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기준을 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 해외출재위험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액은 보험종목별로 보험료와 보험금기준에 의한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순자산이 이를 초과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4단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우리나라는 비로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규제 방식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그후 1998. 6월과 1999. 3월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규정은 1999.6월 개정된 내용인 바 지급여력항목을 변경된 회계제도에 맞추어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을 조정하고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책임보험금의 4%로 강화하는 등 보험회사의 재무건전화를 유도하고 보험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나. 지급여력제도의 주요 내용

(1) 지급여력기준의 설정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의 모델은 EU의 제도로서 파산확률모형을 이용, 총손해액과 총사업비의

합이 총보험료와 Solvency Margine(F)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확률이 ϵ 되는 F를 계산하여 지급여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통계량은 과거 5년간의 보험회사별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율을 사용하여 동비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유의수준 $\alpha=0.001$ 에서 필요한 지급여력 산정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금 기준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계산 결과 보험료 기준 비율은 17.8%, 보험금 기준 비율은 25.2%로 산정(보유사업비율을 29.4% 적용)되었다.

● 일반보험 지급여력비율 산출모델

－ 보험료기준비율

$$= \text{합산율평균} + \text{합산율 표준편차} \times Z(1-\alpha)$$

*평균과 표준편차는 매회계년도 회사별 합산율을 기초로 함

여기서 합산율 = 경과손해율 + 보유사업비율

$Z(1-\alpha)$: 합산율의 표준정규분포값,

유의수준 $\alpha=0.001$

－ 보험금 기준비율 = 보험료기준비율 / (1 - 사업비율)

*사업비율은 과거 평균 회사별 보유사업비율임

*모형설정 :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20개 이상이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음.

*파산확률설정 : 파산확률은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동 모형하에서 허용 가능한 오차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통계자료 형태 : 수지상등의 원리를 이용, 보험료(수입) 및 사업비, 손해액이 나타날 수 있는 손해율 및 사업비율을 이용.

(2) 지급여력기준 및 지급여력비율의 산정

● 지급여력 계산항목

－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보험료 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자본조정, 후순위차입금

－ 차감항목 : 신계약비, 선급비용, 무형자산

● 지급여력기준액 평가 방법

◇ 회사의 지급여력기준액: 일반보험 +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다음 중 큰 값)

- 1년간 보유보험료 × 보험료기준비율(17.8%)
- 3년 평균보험금(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비율(25.2%)
- 장기보험(다음 중 큰 값)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 × 보험료기준비율(17.8%)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3년 평균보험금(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비율(25.2%)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액 × 100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기존의 지급여력부족비율에 의하여 조치하던 방법을 지급여력비율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변경되어 지급 여력 비율 100% 이하부터 단계적으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 사항에 대한 그 내용은 <표 5>와 같으며 현행 지급여력 제도의 내용을 개정전의 기준과 비교,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 EU 방식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회사의 과거 합산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파산확률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계산하여 실제지급여력과 비율로서 지급능력을 평가한다는 기본 원리는 EU방식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확률모형에 투자수익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EU 방식은 제외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 기준비율상 차이를 두는 EU 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EU방식에서는 원수보험료 및 원수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기준 비율을 곱

<표 5>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조치내용

지급여력 비율	조치단계	조치 내용
100% 초과	정상	없음
50~100%	경영개선 권고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함 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② 사업비의 감축 ③ 점포관리의 효율화 ④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⑤ 부실자산의 처분 ⑥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⑦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⑧ 효율조정 권고 ⑨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 배당의 제한 ⑩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0~50%	경영개선 요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①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② 임원진 교체 요구 ③ 보험사업의 일부 정지 ④ 인력 및 조직의 축소 ⑤ 재보험 처리 ⑥ 합병, 제3자 인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계획 수립 ⑦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⑧ 자회사의 정리 ⑨ 경영개선권고의 조치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
0% 미만	경영개선 명령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함 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②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보험관리인의 선임 ③ 6월 이내의 보험사업 전부 정지 ④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⑤ 합병 ⑥ 제3자에 의한 보험사업의 인수 ⑦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⑧ 경영개선 요구의 조치 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

<표 6> 지급여력제도 요약

구분		현행	개정전
지급 여력	합산항목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신설) 자본조정(신설) 후순위차입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후순위차입금납입
	차감항목	신계약비 선급비용 무형자산	신계약비 자기주식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선급비용 퇴직금총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차감한 잔액 해당부실액이 대손충당금 초과금액
지급여력기준		일반보험지급여력기준+장기보험책임준비금의 4%+장기위험보험금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일반보험종목별 지급여력기준+책임준비금의 1%+해의출재보험료의 2%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	좌동
적기시정조치		지급여력비율 100%초과 : 정상 50-100% : 경영개선권고 0-50% : 경영개선요구 0%미만 :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부족비율 0%미만 : 정상 0-50% : 경영개선권고 50-100% : 경영개선요구 100%초과 : 경영개선명령

하여 지급여력기준을 산정한 후 원수보험금에서 재보험처리에 의하여 보완되는 비율만큼 지급여력을 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수재보험료를 반영한 보유보험료 기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보험금에만 비례하여 지급여력을 조정하는 경우 수재보험금이나 출·수재보험료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위험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회사별 지급여력 현황

1999. 10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국내 13개사 외국사 국내지점 3개사로서 총 16개사이다. 외국사 국내 지점의 지급여력에 대하여는 해외 본사의 지급능력과 관계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그러나 최근 개정된 경영실태평가 제도에서는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13개사중 전업사인 서울보증보험(주)과 대한재보험(주)를 제외한 11개 원수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액 및 지급여력, 그리고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997회계년도(1997.4.1-1998.3.31)부터 평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지급여력액 20,416억원, 지급여력기준액

<표7> 손해보험회사별 지급여력현황

(단위 : 억원, %, %p)

구분	1998.3.31			1999.3.31(개정전)			증감	1999.3.31(개정후)			차이
	지급여력(A)	지급여력기준(B)	비율(A/B)	지급여력(A)	지급여력기준(B)	비율(A/B)		지급여력(A)	지급여력기준(B)	비율(A/B)	
동양	1,503	1,016	148.0	1,854	909	204.0	56.0	1,656	1,184	139.8	-64.2
신동아	1,100	646	170.2	1,239	630	196.8	26.6	1,126	786	143.4	-53.4
대한	1,075	599	179.4	1,213	542	223.8	44.4	1,061	658	161.2	-62.6
국제	667	373	178.7	342	329	103.8	△ 74.9	330	406	81.3	-22.5
쌍용	832	703	118.5	1,149	586	196.2	77.7	1,016	752	135.1	-61.1
제일	978	701	139.6	1,163	651	178.6	39.0	923	826	111.7	-66.9
해동	161	432	37.3	253	353	71.5	34.2	161	425	37.9	-33.6
삼성	6,850	3,365	203.6	12,989	3,128	415.2	211.6	13,063	4,080	320.2	-95.0
현대	2,553	1,865	136.9	2,988	1,679	177.9	41.0	2,853	2,180	130.9	-47.0
엘지	3,198	1,579	202.5	4,127	1,374	300.5	98.0	4,166	1,746	238.6	-61.9
동부	1,499	1,760	85.2	2,470	1,449	170.5	85.3	2,655	1,831	145.0	-25.5
계	20,416	13,038	156.6	29,787	11,630	256.1	99.5	29,010	14,874	195.0	-61.1

자료)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13,038억원, 지급여력비율 156.5%로 나타나고 있고 1998회계년도의 경우 지급여력 29,787억원, 지급여력기준 11,630억원, 지급여력비율 256.1%로 99.5%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Y' 97년도의 경우 해동화재(주)의 지급여력비율이 37.3%로서 경영개선 요구대상에 해당되고 다음으로 동부화재(주)의 경우 85.2%로서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Y' 98년도의 경우 해동화재(주)의 지급여력비율은 71.5%로서 전년 대비 34.2%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부화재(주)의 경우는 170.5%로서 전년 대비 85.3%p 개선되어 적기시정조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자동차보험제도의 변경에 따른 요율 인상효과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전반적인 개선에 따라 자동차보험종목의 비중이 큰 동사의 경우 수지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해보험 11개사 중 10개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제화재(주)의 경우는 전년 대비 74.9%가 감소한 103.8%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타사에 비하여 화재, 해상등 일반보험의 비중이 큰 동사의 상품구조상 일반보험의 원수보험료 하락율이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컸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영업정책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하락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FY' 98년도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하여 1999. 6월에 개정된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평균 -76.2%, 최저 국제화재(주)의 -28.7%에서 최고 삼성화재(주)의 -122.6%까지 그 비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삼성화재(주), LG화재(주)와 같은 대형사의 감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의 효과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보험보다는 장기보험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대형사의 경우 소형사에 비하여 장기보험의 비중이 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행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11개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320.02%로서 가

<표8> 지급여력 변화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개 정 전	현 행	차 이		
			금액	구성비	
지급여력 (A)	29,787	29,010	△777		
지급여력 기준	일반	10,107	10,387	280	8.6
	장기	1,523	4,486	2,963	91.4
	계	11,630	14,873	3,243	100.0
비율(A/B)	256.1	195.0	△61.1		

자료 :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장 충실한 비율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면 국제화재와 해동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81.3%, 37.9%에 불과하여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의 두가지 흐름은 개별보험회사의 위험 크기에 따라 최소자본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미국의 RBC 방식과 보험회사의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금액 만큼의 자본 금액만을 요구하는 유럽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는 유럽식의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과 유럽의 제도 중 어느 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택할 것인가는 각국의 보험정책의 강도, 보험 회계제도 및 문화 등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서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미국식의 제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¹⁸⁾ 이는 미국식의 제도가 가지는 객관적인 정확성과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EU방식은 지급여력의 산출이 계산이 용이하여 그 기능성이 뛰어나 실무적으로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보험영업리스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제반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감독당국에 의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유지되어 온 사전적 규제 환경 하에서는 제반 리스크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금리자유화 등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금융환경의 규제 완화 추세 및 시장 개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의 등장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제도적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간 또는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심화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하여 보험회사간의 리스크가 현격히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인 감독상의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스크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별 회사별로 리스크 보유에 상응하는

18)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보험감독정책을 펴온 일본이 미국의 RBC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의 우수한 보험회사들도 자사의 위험관리 정책상 RBC 제도를 원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보험회사 평가회사인 A.M. BEST사도 RBC 제도와 유사한 평가모델(Capital Adequacy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미국의 RBC 제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금융환경 하에서 리스크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RBC 제도는 RBC 비율 산출시 위험계수 설정 등에 있어 산출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밖에 없어 통계적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고 RBC 비율 산출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동제도는 보험영업리스크는 물론 투자리스크, 금리차리스크등 손해보험회사가 처한 제반 리스크를 계량화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상의 리스크를 분석,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지급여력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양한 리스크에 보다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RBC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동제도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시험적 위험기준자본금 제도를 만들어 가동할 필요가 있는 데 위험분류의 세분화문제, 자산불량률 및 자산가치변동율의 추정에 의한 정확한 위험계수의 산출, 용인하는 파산확률의 결정, 위험기준자본금의 요구수준 등은 모의실험과정에서 상당히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BC제도의 도입에는 감독목적에 부합되는 회계보고서가 필수적이므로 지급능력에 대한 정보위주의 효용성 있고 투명한 보험회계기준을 동시에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손광기, 김현수, 김광룡 「손해보험 재무리스크 관리론」, 1997. 10 보험연수원
신동호, 안철경 「자유화에 따른 보험감독기관의 역할 제고」, 1997. 11 보험감독원
홍순구, 정홍주 「보험경제론」, 1996. 6 보험연수원
신이영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예측모형비교 연구」, 1998. 6.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기철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 측정을 위한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1998. 6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순재 “손해보험산업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하여”, 1997. 12 보험조사월보
권녕한 “생명보험회사의 현금흐름 개선 방안”, 1999. 1 보험개발연구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편람」, 금융감독원, 1999. 2

외국문헌

- Baresse, J and J.M. Nelson, The Consequences of Insurer Insolvencies : Paper presented at ARIA meeting, 1991
Robert W. Klein and Michal M. Barth, “Solvency Monitor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Vol. 13(3), 1995
Harold D. Skipper, “ Insurer Solvency Regulation in the United S tates” Policy Issues in Insurance,

Paris : OECD, 1993

Mark J. Browne and Robert E. Hoyt, " Economics and Market Predictors of Insolvencies in the Property-Liabilities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62(2), 1995

William R. Feldhaus and Michal M. Barth, "Risk Based Pricing Factors for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Guaranty Funds, *CPCU Journal*, vol 45(4), 1992

J. David Cummins, Richard A. Derrig, *Classical Insurance Solvency Theory* : Kluwer Acede Publishers, 1988

